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명	이준형	소속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질문대상자	기획조정실장		
질문제목	민간위탁 사업 등 기획조정실 추진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질문내용></p> <p>1. 민간위탁 제도의 문제점과 혁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5년간 민간위탁 제도 관련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수탁업무의 영속화로 장기 수탁기관의 발생 등 민간위탁 제도의 효율성 저하에 대한 개선방안 <p>2. 우수정책 해외수출 사업의 추진 현황과 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6년 이래 연도별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추진실적- SH공사가 전담조직으로 선정된 배경과 경위- 전담조직의 교체 등 우수정책 해외수출 사업의 부진한 실적 개선 방안 <p>3. 투자출연기관 평가의 실효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5년간 투자출연기관 평가제도 관련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의 개선 결과를 투자출연기관 평가 기준에 포함 등 평가제도의 실효성 개선 방안			

이준형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민간위탁 제도의 문제점과 혁신방안

가. 지난 5년간 민간위탁 제도 관련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나. 수탁업무의 영속화로 장기 수탁기관의 발생 등 민간위탁 제도의 효율성 저하에 대한 개선방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 제도의 문제점과 혁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작성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담당사무관	전윤주
자	☎ 2133-6743	주무관	김나경
	작성일 : 2020. 12.		

가. 지난 5년간 민간위탁 제도 관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016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지적사항	조치사항
<p>○ 현행 민간위탁사업 규모가 1조 400억원임. 따라서 소관 부서의 인력 규모로는 많은 민간위탁사무의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고, 형식상 외부 회계감사도 실효성이 없음. 실효성 있는 외부 회계감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라며, 일반 기업과 공기업 회계는 다른 점을 감안, 통일된 시차원의 회계감사 지침 및 정산 매뉴얼을 만들고 회계사들에게 숙지시켜 효율적인 민간위탁 업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실시 대상을 전체 민간위탁사무로 확대('1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수탁협약서, 사업계획 대비 집행내역의 적정성(목적외 사용금지) 검토 등 이행감사 실시 ○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등 운영 매뉴얼 마련('1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사무 특성에 맞춘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집행기준 수립 - 외부 감사인 선정기준 및 회계감사절차 규정 ○ 일관된 기준의 회계감사 실시 및 회계감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합회계감사 지속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도입, 150개 사무) → '18년(174개 사무) → '19년(205개 사무) → '20년(228개 사무) → '21년(286개 사무 예정) ※ 10억원 미만 사무 + 10억원 이상 신청 사무
<p>○ 민간위탁이나 재계약시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민간위탁기관에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표준협약서상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80%) 의무 규정('16.8.)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시 종사자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평가지표 확대('17.12.)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협약서 및 지침에 종사자 채용 시 위·수탁 협약기간과 동일한 근로계약기간 설정 권고 명시('21.상반기) ○ 표준협약서에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가능 명시('21.상반기) ○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의무 추가('21.상반기)

<p>○ 민간위탁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부정비리가 적발되는 수탁기관이 있으며 서약서 양식 등이 불일치됨. 수탁기관 선정 시 통일된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통일된 업무처리 지침을 작성하기 바람</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사무 특성에 맞춘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인사·노무 운영기준 수립하여 민간위탁사무 추진 관련 통일된 업무 지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마련('17.11.) ○ 부정비리 사전 예방 위해 수탁사무 종사자 채용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규정 신설 ('20.1.) ○ 수탁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시 홈페이지 공개 및 청렴·성희롱 예방·인권교육 연 1회 의무 실시 ('20.1.)
<p>○ 민간위탁 사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지도점검이 부실하다고 판단됨. 수탁기관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점검 매뉴얼 수립과 관행적인 재계약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p>〈통일된 지도점검 매뉴얼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된 기준의 위탁사무 지도·점검 시행을 위해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등 운영기준 수립('1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마련 ○ 협약불이행 내용에 따른 표준화된 제재조치 기준 마련('1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해지, 개선명령, 서면경고 등 단계별 조치기준 수립 <p>〈관행적 재계약 문제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기관(사회복지시설 외) 재계약 횟수 제한('17.1.) ○ 재계약·재위탁사업 의회동의기간 단축하여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재검토('17.8.) : 재위탁·재계약 시 매 4회차 → 의회 동의 받은 때로부터 7년 경과 ○ 장기수탁 비율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재계약 횟수 제한 ('18.5., 복지정책과) ○ 재계약·재위탁사업 의회동의기간 단축(7년→6년)하여 민간위탁 추진필요성 재검토('19.3.)

<p>○ 민간위탁 일몰제에 대한 입법예고 상태인데 수탁기관의 경우 한번 위탁받으면 계속 위탁받는다 인식되어 도덕적해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기관(사회복지시설 외) 재계약 횟수 제한('17.1.) ○ 재계약·재위탁사업 의회동의기간 단축하여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재검토('17.8.) : 재위탁·재계약 시 매 4회차 → 의회 동의 받은 때로부터 7년 경과 ○ 장기수탁 비율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재계약 횟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18.5., 복지정책과)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개정 ('19.1., 복지정책과) ○ 재계약·재위탁사업 의회 동의기간 단축(7년→6년)하여 민간위탁 추진필요성 재검토('19.3.)
---	--

○ 2017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지적사항	조치사항
<p>○ 민간위탁사업비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나 위탁금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위탁기관이 자체적으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감사를 받고 있음. 객관적인 회계감사를 위해 서울시에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감사를 받도록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 시 외부 감사인 선정기준 및 회계감사절차를 매뉴얼에 규정('17.11.) ○ 일관된 기준의 회계감사 실시 및 감사수수료 절감을 위한 통합회계감사 지속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도입, 150개 사무) → '18년(174개 사무) → '19년(205개 사무) → '20년(228개 사무) → '21년(286개 사무 예정) ※ 10억원 미만 사무 + 10억원 이상 신청 사무 ○ 매년 회계감사 실시 전 민간위탁사무 소관 사업부서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지정한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 받도록 안내('17년~현재)

○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의 경우 매년 회계법인이 교체될 경우 정확한 사업비 분석 및 감사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회계감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3년 정도는 동일한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추진상황 : 추진완료

추진내용

- 회계감사용역은 지방계약법령상(지방계약법 제24조) 장기계속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재무과 의견), 현행대로 1년 단위 계약 불가피함
 - 회계감사용역은 과업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하여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용역의 사업자 선정 시 활용 가능한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사업추진 곤란
- 다만, 일관된 기준의 회계감사 실시 위해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집행기준 수립
 -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마련('17.11.)

○ 우리 시의 시금고인 우리은행 경우 특혜채용 비리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었음. 그러나 서울시와 민간위탁 등 각종 계약관계에 있는 단체나 기업들이 서울시 정책기조와 어긋나거나 반사회적인 행동, 범죄 등 사회적으로 규탄을 받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한 업무협약 조항은 없음. 우리 시의 이미지와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서울시의 후속조치 방안 등에 대하여 기준을 만들고 향후 협약 등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추진상황 : 추진완료

추진내용

- 협약불이행 내용에 따른 표준화된 제재조치 기준 마련('18.1.)
 - 협약해지, 개선명령, 서면경고 등 단계별 조치기준 수립
- 표준협약서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 상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채용 시 공개모집 원칙 규정('18.1.)
 - 시 홈페이지 및 서울일자리포털, 민간 취업포털사이트 2곳 이상 공개하고 최소 15일 이상 공고 의무 신설
- 채용 심사위원 구성 시, 과반수 이상 외부위원 선임 의무 및 제척·기피·회피규정 신설('20.1.)

<p>○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회동의안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하지만 대부분 동의안을 위탁 시작 바로 전에 제출함으로 의회에서 충분히 심사할 시간이 부족함. 향후 담당 부서에서 서울시 전체 민간위탁 사업의 시의회 동의를 있기 몇개월 전까지 제출한다는 방침을 마련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시의회에서 동의안을 먼저 처리한 후 예산안 의결을 거쳐 민간위탁사무를 개시토록 하고 있으며, ○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또는 의회 동의과정에서의 보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산안과 동시 상정 가능 ○ 또한, 시의회에서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반기 정례회 이전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수시 안내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계서판에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 일정 공지 - 시의회 부의안건 제출 공문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시기 안내 ○ 향후에도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	--

○ 2018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지적사항	조치사항
<p>○ 민간위탁사업의 주체인 민간이 도덕성이 높아야 함에도 매년 부정 수급 등의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가 경미하다고 생각됨. 금전적 손해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다음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관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와 비위방지를 위해 민간위탁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대책 수립('19.5.) ○ 회계 매뉴얼 수탁기관 종사자 교육 강화('19.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회계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실제 지적사례 활용 교육 실시하여 회계부정 등 재발 방지(총 324명 교육) - 민간위탁기관 회계 등 지도점검 시 전문가 동행 컨설팅 추진 ※ 입찰참가 제한은 법률에 직접 규정 필요, 지방계약법 준용 불가 (행안부 질의회신, '18.1.15)

<p>○ 민간위탁 수익창출형 사업 관련 실적이 제각각임. 적자가 나는 곳도 있는데 '수익창출형'이라고 사업을 하고 있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칭 및 정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기 바람.</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수탁기관, 사업부서 참여하여 민간위탁 '수익창출형' 사무유형 명칭 변경에 대한 논의 추진 (민간위탁 거버넌스, '19.7., '20.7.) ○ '수익창출형' 사무유형 명칭을 '자립형'으로 변경하여 운영 중 ○ 지침 개정('21년 상반기) 시, 사무유형 명칭 변경사항 (수익창출형 → 자립형) 반영 예정
---	--

○ 2019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지적사항	조치사항
<p>○ 민간위탁 사업평가 시 지적되는 특정단체만 진입하는 문제, 고용승계 의무 위반 등 사례들을 모아 조치방안 강구 필요, 또한 민간위탁 준칙사항을 계획, 조례 부칙 등에 나열하여 위반 시 민간위탁 수행업체에 대한 제재 등 방안 마련 바람</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 심사 과정에서 수탁기관의 재정·인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 공문 시행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 수탁기관 자체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전체 종사자가 연 1회 이상 의무참석토록 조치하였으며, 청렴교육 실시 결과를 민간위탁 종합평가에 반영토록 배점기준 마련('20.1.) ○ 향후 위반사례 중심의 민간위탁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추진토록 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승계 의무조항 악용방지를 위해 고용승계 예외사항을 구체화하여 지침 반영 예정('21.상반기) ○ 회계·노무분야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보완 시행('21.상반기)

<p>○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성격의 단순 시설 관리와 사회적 경제 사업과 같은 가치지향적 사업의 성과지표 및 협약서가 유사하여 혼란이 있음. 민간위탁의 유형을 시설관리, 용역관리, 가치지향적 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계약서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담는 등 계약서를 개선하여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고, 고의·악의적 비위에 대해 시에서 감사·조사를 통해 걸러내는 등 민간위탁 청렴성 제고를 위해 고민해 주기 바람</p>	<p>□ 추진상황 : 추진중</p> <p>□ 추진내용</p> <p>○ 민간위탁을 사무형, 시설형, 수익창출형 외 가치지향적 위탁사무(중간지원조직형)로 구분·관리하고, 민간위탁 사무유형에 따른 맞춤형 성과지표 마련</p> <p>※ 가치지향적 위탁사무(중간지원조직형) 성과지표 개발('16.3.)</p> <p>○ 또한, 민간위탁사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위탁사무 감시·평가활동' 지속적 실시 추진 중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6.~)</p> <p>□ 향후계획</p> <p>○ 중간지원조직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시와 수탁기관의 상호협력 원칙 명시 등 협약서 개정('21.상반기)</p>
<p>○ 민간위탁하는 절차와 관련된 업무 노력이나 비용을 감안할 때 민간위탁보다 재단의 영역을 확대해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보기 바람</p>	<p>□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 추진내용</p> <p>○ 민간위탁사무를 재단화하는 경우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고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등 장점이 있으나,</p> <p>○ 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경제성 분석 등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를 거쳐 심의를 받은 후, 주민의견 수렴 및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재단설립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하는 등 절차 및 요건 상 다수의 재단을 설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p> <p>※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절차 : 설립 추진 기본방침 결정 →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및 심의 → 설립 협의(행정안전부) → 조례·정관 제정 → 재단 설립</p> <p>○ 이에, 민간위탁 방식보다 재단 사무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해당 사무를 재단화 할 수 있도록 재단 설립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겠음</p>

○ 2020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지적사항	조치사항
<p>○ 민간위탁 제도 관련, 수탁업무의 영속화로 장기 수탁기관의 발생 등 민간위탁 제도의 효율성 저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바람.</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기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기관(사회복지시설 외) 재계약 횟수 제한('17.1.) ○ 재계약·재위탁사업 의회동의기간 단축하여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재검토('17.8.) : 재위탁·재계약 시 매 4회차 → 의회 동의 받은 때로부터 7년 경과 ○ 동일기관 재계약 관행 개선 위해 장기수탁 비율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재계약 횟수 제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18.5., 복지정책과)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개정 ('19.1., 복지정책과) ○ 재계약·재위탁사업 의회동의기간 단축(7년→6년)하여 민간위탁 추진필요성 재검토('19.3.) <p><input type="checkbox"/>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21.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시 직영(용역 등) 및 투자출연기관 (대행/고유사무) 사무 추진 가능여부 등에 대한 검토서 제출 ○ 공개모집 전환해야 하는 경우를 지침 등에 명시하여 동일 기관 반복 재계약 관행 해소 유도('21.상반기) ○ 수탁기관의 전문성·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하여 종합성과평가 개선('21년 중)

나. 수탁업무의 영속화로 장기 수탁기관의 발생 등 민간위탁 제도의
효율성 저하에 대한 개선방안

- 총 397개 민간위탁사무 중 20년 이상 장기수탁 중인 기관은 39개(9.8%)이며, 이 중 17개(43.6%)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함('20.11월 기준)
 - 사회복지시설 외 나머지 22개 사무는 기부채납한 시설의 사무(축령·백양정신병원) 및 청소년시설(시립서울청소년센터, 시립노원청소년센터 등 10개 시설) 등이 해당됨
- 사회복지시설의 장기 수탁 문제를 개선하고자 '18년 5월부터 재계약 횟수(1회)를 제한하여 시행 중이며, 위·수탁협약 종료 시기 도래에 따라 재계약 반복 관행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사회복지시설 최초 위탁기간 5년 규정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18.5., 복지정책과) 및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개정('19.1., 복지정책과) : 재계약 횟수(1회) 제한
 - ※ 사회복지시설 외 민간위탁기관 재계약 횟수 제한('16.8., 조직담당관)
- '21년부터는 직영(용역 등) 및 투자출연기관 사무(대행·고유사무) 추진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토서를 제출토록 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신규, 재계약, 재위탁) 심의에 반영함으로써 민간위탁 방식의 사무 추진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 수탁기관 선정 시 종사자 겸직사항, 동일 법인 여부(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포함)를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동일기관 중복 수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할 계획임
 - 동일기관이 여러 사무를 중복 수탁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과거 실적 및 각종 불법 부당한 행위 여부 등을 조사하여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또한,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지침에 재계약 제한요건을 명시하여 부적격기관과 재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 재계약 제한요건 (안) 〉

- ▶ 종합성과평가 결과 60점 미만
- ▶ 적격자심사 결과 70점 미만
- ▶ 지도·점검 등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시정조치 하지 않은 경우
- ▶ 위탁기간 중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성희롱 성폭력, 인권침해, 사업비 횡령, 부당 노동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아울러, 수탁기관의 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21년 중 종합성과평가를 개선하고 재계약·재위탁 심사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역량이 부족한 기관이 반복 수탁하는 일을 방지하겠음
- 앞으로도 민간위탁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장기수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이준형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 우수정책 해외수출 사업의 추진현황과 개선방안

- 2006년 이래 연도별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추진실적
- SH공사가 전담조직으로 선정된 배경과 경위
- 전담조직의 교체 등 우수정책 해외수출 사업의 부진한 실적 개선방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정책 해외수출 사업의 추진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작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성	서울특별시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담당사무관	오 근
자	☎ 2133-5266	주무관	권 선 애
	☎ 2133-5292	주무관	최 우 임
작성일 : 2020. 12.			

1 2006년 이래 연도별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추진실적

- 그동안 해외 60개 도시(기관)에 85개 총 7,982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였음.

< 연도별 현황 >

계	2011 이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85건	7건	3건	5건	9건	12건	9건	16건	13건	7건	4건

※ '06년 1건, '07년 1건, '08년 2건, '09년 1건, '10년 0건, '11년 2건

< 분야별 현황 >

- 교통·도시철도·전자정부·상수도 분야가 73건 86%로 대부분을 차지

계	교통	도시철도	전자정부	상수도	도시계획	환경	소방	주택
85건	36건	17건	15건	5건	5건	3건	3건	1건

< 지역별 현황 >

-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이 50건 59%로 가장 많음
- 최근 우간다·케냐·아르헨티나 등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 증가 추세

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중동	기타
85건	50건	12건	10건	4건	3건	2건	4건

< 유형별 현황 >

- (컨설팅/교육 등) 60건(전체 건수의 71%), 사업비 212억(전체 사업비의 3%)
- (시스템구축 등) 25건(전체 건수의 29%), 사업비 7,770억(전체 사업비의 97%)

※ 연도별 사업추진 세부내역

(2020. 11월 현재/단위: 억원)

분 야	국 가	도 시	사업내용	사업 기간	사 업 비		재 원
					총사업 비	국 수입	
교통카드 시스템 자동운임 수입 / 통합정산 (16건)	중 국	베 이 징	·지하철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06~'10	570	-	해외정부
	뉴 질 랜드	웰 링 턴	·교통카드 및 정산시스템 구축	'07~'13	145	-	해외기업
	뉴 질 랜드	오 클 랜드	·교통카드 및 정산시스템 구축	'11~'13		-	해외기업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버스결제시스템 구축	'09~'13	140	-	해외정부
	콜 롬 비 아	보 고 타	·교통카드구축 및 유지보수	'11~'15	3,000	-	민관투자
	태 국	방 쿡	·교통카드 구축 실시설계	'12~'16	5.5	0.29	해외정부
	그 리 스	아 테 네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14~'16	2,054	-	민관투자
	몽 골	울란바토르	·교통카드·버스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4~'25	70	-	민관투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대중교통통합정산시스템 구축	'14~'17	110	0.6	해외정부
	코티디부아르	아 비 장	·버스교통카드시스템 구축	'15~'15	15	-	해외기업
	사 우 디	메 카	·외곽 ITS 마스터플랜 수립 컨설팅	'15~'15	1.6	-	과기부(NIPA)
	말레이시아	말 라 카	·버스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15~'25	38	-	해외정부
	이 집 트	카 이 로	·지하철 교통카드시스템 기본계획 수립	'16~'17	2.28	0.68	기재부(KSP)
	태 국	방 쿡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17~'18	90	-	해외정부
	필 리 핀	교 통 부	·교통카드 국가표준 수립 컨설팅	'18~'19	1.8	-	해외정부
	필 리 핀	교 통 부	·대중교통통합정산시스템 구축사업 타당성조사	'18~'19	5.96	-	EDCF(FS)
지 능 형 교 통 시 스템 (5건)	몽 골	울란바토르	·지능형교통시스템 등 구축	'08~'09	120	-	EDCF(본사업)
	아제르바이잔	바 쿠	·지능형교통시스템 등 구축	'08~'11	1,100	-	EDCF(본사업)
	필 리 핀	메트로마닐라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컨설팅	'15~'15	2.63	0.40	기재부(KSP)
	몽 골	울란바토르	·지능형교통시스템 중장기 계획 수립 자문	'17~'18	3.7	0.28	ADB
	우크라이나	키 예 프	·스마트시티·도시진단 마스터플랜 수립(교통분야)	'18~'18	1.4	0.22	과기부(NIPA)
교통계획 정 책 (13건)	가 나	아 크 라	·도시교통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기술자문	'14~'16	1.33	1.33	KOICA
	스 리 랑 카	콜 롬 보	·도시·광역 대중교통체계 선진화방안 수립 기술자문	'13~'17	0.47	0.47	KOICA
	베 트 남	다 낭	·광역교통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15~'16	0.45	-	서울시
	인도네시아	반 둥	·교통 인프라 개발지원 정책자문	'15~'16	2.45	0.57	기재부(KSP)
	콜 롬 비 아	재 무 부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 및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수립 컨설팅	'16~'17	3	0.24	기재부(KSP)
	케 나	나 이 로 비	·지능형교통시스템 및 대중교통시스템 개선방안 정책자문	'17~'18	2.55	0.38	기재부(KSP)
	니 카 라 과	마 나 과	·시내버스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17~'18	4.61	0.42	EDCF(FS)
	인도네시아	반 둥	·버스시스템 개선정책 수립 자문	'17~'18	2.54	0.95	기재부(KSP)
	필 리 핀	세 부	·대중교통체계 개선 사업	'18~'18	2	-	서울시+민간
	우즈베키스탄	타 슈 켄 트	·대중교통 발전 전략 수립 지원	'18~'19	2.54	1.21	기재부(KSP)
	탄 자 니 아	다르에스살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4단계 실시 설계 및 감리	'19~'23	93.23	1.75	세계은행
	엘살바도르	산 살 바도 르	·광역교통 체계 개선 역량강화	'20~'22	5	5	KOICA
	인도네시아	자 카 르 타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정책자문	'20~'20	2.27	1.30	기재부(KSP)
케 나	나 이 로 비	·대도시권 관리센터 통합운영 자문	'20~'21	4.07	0.38	기재부(KSP)	
사 례 집 작	개 도 국	-	·모바일 기반 ITS가이드북 개발 컨설팅	'17~'18	3.4	0.37	세계은행

(단위: 억원)

분야	국가	도시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재원	
					총사업비	시수입		
도시철도 (17건)	시설개 (4건)	방글라데시	치타공 - 친키아스타나	· 11개역 신호설비개량	'13~'18	16	0.62	EDCF(본사업)
		미얀마	만달레이	· 만달레이-미치나 철도개보수 외부전문가 용역	'15~'15	0.07	0.07	EDCF(FS)
		미얀마	양곤	· 철도시스템 현대화 기본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16~'17	2.89	0.77	기재부(KSP)
		미얀마	만달레이	· 만달레이-미치나 철도개보수사업 타당성조사	'17~'18	3.78	0.38	기재부(EDCF)
	시설설 (3건)	베트남	호치민	· 1호선 궤도분야 실시설계용역	'13~'15	5.05	2.07	해외기업
		방글라데시	철도청	· 철도(협궤용)차량 구매제작 사업	'18~'20	8.36	4.26	EDCF(본사업)
		미얀마	만달레이	· 케이블카 사업관리 용역	'18~'19	0.8	0.8	해외기업
	재조달 (3건)	베트남	호치민	·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철도개선 정책자문	'15~'16	2.45	0.82	기재부(KSP)
		콜롬비아	콜롬비아개발은행	· 도시교통인프라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수립	'16~'17	3.22	0.51	기재부(KSP)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경전철 12단계 구간 타당성조사	'17~'17	3.5	0.22	국토교통부
	관리운 (6건)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 경전철 3호선 운영관리 컨설팅	'15~'17	12.5	3.66	해외정부
		베트남	호치민	· 메트로 운영관리 정책자문	'17~'17	2.75	1.5	기재부(KSP)
		베트남	호치민	· 도시철도 4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17~'17	4	-	국토교통부
		코스타리카	산호세	· 광역여객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9~'19	3.46	0.35	KIND
		인도	델리	· 델리-메루트급행철도 운영, 유지, 보수관련 기술 자문	'19~'21	7	2.8	ADB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경전철 역강화 사업관리	'20~'22	21.72	12.64	KOICA
	역량강화 (1건)	몽골	울란바토르	· 울란바토르철도공사(UBTZ) 직원 역량강화	'19~'19	0.42	0.42	해외도시
전자정부 (15건)	전자정부 (3건)	모잠비크	마푸토	· 전자정부 적용 타당성조사	'13~'13	2.7	-	서울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 전자정부 적용 타당성조사	'13~'13		-	서울시
		우간다	캄팔라	·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기본 계획 수립	'18~'19	2.65	0.41	기재부(KSP)
	시민참여 시스템	인도	뭄바이	· ICT를 활용한 시민참여 정책컨설팅	'14~'15	4	-	기재부(KSP)
	민원관리	우간다	캄팔라	· 민원관리시스템 개발 및 구축	'19~'21	9.24	-	중소벤처기업부
	청렴건 설정 시스템 (2건)	베트남	다낭	· 청렴행정건설시스템 도입 지원 자문	'16~'17	4	-	UNDP
		우간다	캄팔라					
		태국	회계감사부					
		우크라이나	기반시설부					
		요르단	공공사업주택부					
		필리핀	내무부					
	튀니지	반부패청	· 청렴행정건설시스템 도입 지원 자문	'18~'19	1.2	-	UNDP	
	빅데이터 (3건)	콜롬비아	정보통신부	·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방재 시스템	'15~'15	3	-	NIA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컨설팅	'17~'17	0.12	0.12	해외정부
		우크라이나	키예프	· 빅데이터 기반 교통정책 수립체계 구축 타당성조사	'17~'17	1.34	0.20	과기부(NIPA)
데이터 센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데이터센터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19~'19	3.24	0.66	기재부(KSP)	
역강 화 (2건)	인도	관점삼라후랄리	· 스마트시티 한국형 기술(ICT)적용 프로젝트	'16~'16	0.18	0.18	세계은행	
	사우디	국영개발사	· 서울형 스마트시티 적용 교육연수	'18~'18	0.04	0.04	해외정부	
세무 시스템 (2건)	인도네시아	반둥	·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17~'17	1	-	서울시+민간	
	스리랑카	콜롬보	·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18~'18	2.33	0.35	기재부(KSP)	

(단위: 억원)

분야	국가	도시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재원	
					총사업비	시수입		
상수도 (5건)	시설개량 (4건)	페루	찬차마요	▪수도시설 개선사업 ODA	'12~'18	25.02	-	서울시
		인도네시아	중부자바	▪정수장시설 개량사업 타당성조사	'14~'14	0.76	0.02	국토교통부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정수장시설 개량 타당성조사	'14~'15	1.4	0.05	환경부
		베트남	후에	▪온라인 수질 측정기 제작구매 및 설치	'16~'16	0.69	-	서울시
	시설조성·운영	브루나이	경제개발청	▪PMB섬 인프라 건설 감리	'12~'20	135	4.5	해외정부
도시계획 (5건)	도시개발	베트남	다낭	▪도시개발 전략 컨설팅(하이테크파크 개발)	'14~'14	0.46	-	서울시
		미얀마	양곤	▪한파와디 공항인근 및 양곤주 남서부 지역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15~'17	44	3.42	KOICA
		케냐	콘자	▪콘자 디지털미디어 시티 조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18~'19	5.3	1.85	기재부(KSP)
	지역역량강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16~'16	2.5	2.5	세계은행
	사례집제작	개도국	-	▪관광·문화유산 보전·도시재생 우수 사례집 제작	'17~'17	1.20	0.59	세계은행+서울시
환경 (3건)	하천복원	중국	후난성·허난성	▪동강호·치허지역 하천복원 설계 지원 컨설팅	'15~'15	2.62	1.17	기재부(KSP)
	에너지관리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사물인터넷기술 접목한 LED 가로등 설치	'16~'17	0.55	-	해외정부
	매립지개선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비위생매립지 개선 예비조사	'18~'19	1.05	0.42	과기부
소방 (3건)	소방방재센터 (3건)	방글라데시	소방방재청	▪소방방재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행정 컨설팅	'14~'14	0.83	-	행안부
		방글라데시	소방방재청	▪소방방재 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17~'22	12	-	KOICA
		베트남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현대화를 위한 정책수립지원	'17~'18	2.13	1.17	기재부(KSP)
주택 (1건)	주택일반	몽골	울란바토르	▪임대주택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19~'19	7.04	1.76	EDCF(FS)
총 계				약 7,982.34억원(68.12억원)				

② SH공사가 전담조직으로 선정된 배경과 경위

1. 전담조직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추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서 영리사업 추진 한계, 조직·인력 운용의 한계, 절차적 복잡성 및 경직성 등으로 우수정책 해외진출에 필요한 유연성과 전문성을 갖고 해외도시 및 민간기업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대두 됨.**
 - 이에 **전담조직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타당성 검토 학술연구 용역**’을 실시 함.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추진계획’(14.8.27, 행정1부시장 방침)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타당성 검토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14.8.29)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계획’(15.7.6, 시장 방침)
- ※ 용역 수행 : 서울행정학회(’14. 11~’15. 3월)

2. SH공사가 전담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사유

- 용역 실시 결과, 조직을 신설할 시 부담, 사업초기 적자발생 부담 등 문제점을 고려하여 **기존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이었음.
- 시산하기관의 업무 및 기능적 연계성, 기관의 추진 의사를 반영하고, 우리시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교통·도시철도·상수도 등 우수정책은 복합적인 도시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해외진출 사업과의 기능적 연계성 등을 고려할때 도시개발 전문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었음.

※ 타 시산하 기관 비교 결과

- ▷ (서울연구원·시립대) 사업이해도는 높으나 도시문제 해결위한 연구 기능과 수익 창출, 기업협력 등 사업구도는 연구원 성격에 미부합하며 정체성혼란 우려
- ▷ (서울통상진흥원) 상수도, 도시개발 등 해외사업은 마케팅 중심의 기존 SBA 사업과 괴리가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의 법인 설립목적에 미부합
- ▷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분야 해외사업 중심

3. SH공사 민간위탁 추진 경과

- ‘전담기구 설립 타당성 검토 학술연구 용역’ 이후 SH공사를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수탁기관으로 선정.
- ’15년 10월 시의회 민간 위탁 동의, 이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적격자 심의위원회 및 시의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서울주택도시공사와 ’18년, ’20년 2회 재계약.

※ 관련규정 : 서울시 국제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제21조(사무의 위탁), 서울 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제9조(적격자 심의 위원회)·제12조(재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8의 사(수의계약) 등

< 세부 추진경과 >

- ’15.09월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 ’15.10월 :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15.10.1~’17.12.31)
- ’17.09월 :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및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7.11월 : 시의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17.11.28)
- ’18.01월 : 재계약 협약(’18.1.1~’19.12.31)
- ’19.06월 :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종합점수 : 77.9)
- ’19.09월 : ’19년 제6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
- ’19.09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적정 : 81.8)
- ’19.12월 : 시의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19.12.17)
- ’20.01월 : 민간위탁 재계약(’20.1.1~’21.12.31)

③ 전담조직의 교체 등 우수정책 해외수출 사업의 부진한 실적 개선방안

1. 조직개선 방안 마련

- '20.12월 현재 부서 자체적으로 지난 5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한 서울특별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에 대한 조직 성과 분석 실시 중임('20.12월말 완료 예정).
 - 연도별 사업계획목표 및 달성도, 수행사업 결과 분석, 실적, 한계점 등
 - ※ 위·수탁 계약완료 : '21.12월
- 부서 조직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외부전문기관의 검토를 통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음('21년).

2. 사업 분야 및 도시 확장 등 적극적 업무 추진

- 페루 리마 스마트도시 추진 등 기존 중남미 지역 전자정부 사업의 분야·국가 확장
- 베트남 중부지역 스마트도시 구축 등 기존 컨설팅 사업의 본사업화
- 인도 TOD(대중교통지향 도시개발) 사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사업의 재추진

3. 네트워크 활용 자원발굴

- 기획재정부 KSP(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부처협력사업, KSP-다자개발은행 공동컨설팅 사업 등 다양한 추진
- 중앙정부, 수요국의 중앙·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통한 기획재정부 대외 경제협력기금 차관연계 사업 적극 추진
- WB, ADB, AFDB, IDB 등 다자개발은행-한국신탁기금 연계 사업 참여확대
- 외교부 코이카 글로벌 정책연수, 국별협력사업 및 국가개발협력사업 협의회 사업 지속 추진

이준형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 투자·출연기관 평가의 실효성 제고

가. 최근 5년간 투자·출연기관 평가제도 관련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개선 결과를 투자출연기관 평가기준에 포함 등 평가제도의 실효성 개선방안

가. 최근 5년간 투자·출연기관 평가제도 관련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 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2015		해당사항 없음
2016	<p>○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상대 평가제도는 엉망이다’라고 평가 되어 있음. 공기업 평가관련 상대평가로 인한 점수 하향화로 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 위원장의 노숙사건도 있었고 연봉제와 상대평가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그에 맞는 평가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산하 기관에 대한 상대평가 시 메르스 사태 등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제도의 활성화와 부분수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 하기 바람</p>	<p>○ 특별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피평가기관이 경영평가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여부 등)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17년부터 적용)</p> <p>▶ 경영평가지표 : 총 인건비 인상률 준수 (2점)</p> <p>▶ 주요내용 : 최저임금 기준 충족을 위한 임금인상액 등 정책준수에 따른 인상분(소급적용 가능) 및 예측이 어려운 객관적 특이소요(세월호, 구제역 등 유사사항 관련 시간외 수당 지급 등, 증빙 서류 확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증가분은 제외한다.</p>

연 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2016	<p>○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관련, 상대평가제에 대한 서울시 산하기관들 불만이 있음. 대상 기관들이 수궁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대상기관과 소통을 통하여 마련하기 바람</p>	<p>○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포럼 운영 6회 - 기 간 : '17. 1 ~ 6월 - 구 성 : 12명(외부전문가 6명, 노사대표, 모델협 등) - 추진방법 : 서울연구원 협업 공동연구 추진 - 주요주제 ▶ 안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표의 적정성 ▶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평가체계 개선 ▶ 경영평가 환류 강화방안 등</p> <p>○ 또한, 모든 평가지표는 전년도에 시 주관부서 및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거쳐 수립</p>
2017		<p>해당사항 없음</p>
2018	<p>○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성격과 형태가 각기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인 성과지표로 경영평가를 하고 있음. 경영평가 결과로 성과급이 결정되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방침이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또한 전년도에 대한 평가와 성과급 지급 시기가 다음연도 10월로 너무 늦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p>	<p>○ 모든 평가지표는 전년도에 시 주관부서 및 기관 등의 의견수렴 및 협의과정 거쳐 수립함으로써 평가 수용도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음 - 지표 개선 의견수렴 및 수시 실무회의 개최 등</p> <p>○ 경영평가 지연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하여 지급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평가 완료시기 : ('18년) 9월 → ('19년) 8월</p> <p>○ 금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기관(서울의료원, 120다산콜재단, 신용보증재단)의 현안업무가 증가하고, 현장 대면조사·인터뷰 실시에 어려움이 있어 기관에서도 일정조정 요청이 있어 '20.3월 추진 일정을 연기하여 통보한 바 있음('20.11월말 완료)</p> <p>○ 2021년에는 경영평가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연 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연구원은 중복 연구, 국외 출장 보고서 제출 지연, 구정연구단 관리 미비 등 운영상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또한 2018년 경영평가 점수가 낮은 이유가 포괄임금제 운영이었는데, 그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고도 2019년에 가등급을 받았음. 지도·감독 차원과 경영평가 반영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19년 실적) 경영평가 보고서 및 개선과제에 '포괄임금제 운영 개선'을 명시 ○ 개선하지 않을 경우 매년 '경영평가 지적사항 이행' 지표 감점(개선 미이행 과제 누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감점지표, -1.00점) 평점 = 경영평가 개선과제 이행과제 수 / 이행 목표과제 수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위원이 학계에 편중되어 있음. 노동자, 장애인 등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위원 구성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평가 위원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거, ① 업무담당 공무원, ②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 ③ 3년이상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등으로 구성이 가능 ○ 법적 자격요건으로 인하여 다양한 위원 구성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존재하나 평가단 구성 시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위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개선 결과를 투자출연기관 평가기준에 포함 등 평가제도의 실효성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기관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미이행 시 '감사 지적사항 이행' 평가지표에서 감점 부여(최대 -1.00점)
 - 평점 = (감사원 감사,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감사 등 지적사항 이행건수) / 이행 목표과제 수
- '21년 평가 시 경영평가 지적사항 및 감사 지적사항 이행에 대한 감점 폭을 확대 조정하는 등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음

작성 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	담당사무관	유제우
	☎2133-6774	주무관	김규동
	작성일 : 2020. 12.		